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2019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대상기간 : 2018. 1. 1. ~ 12. 31. (신청 전년도 실적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대상기업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MOU 체결기업, 투자유치의향서 제출기업) 또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지원조건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 2018년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2017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 (단, 2018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상시고용인원 〉

-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1호, 2019. 4. 12.)
- ◆ 정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
-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제외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18년 신규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지원금액

- 1기업 당 4억 원 이내 (고용보조금 2억 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이내)
 -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지원예산 : 300백만 원
 - ※ 예산액에 비해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추가고용 계획,
증액투자(FDI) 계획, 시 유치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8. ~ 8. 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전화번호 : 02-2133-4765 (보조금 지원 담당자)
 - e-mail : sangwoon.jeong@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서울시청 투자창업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붙임 별지 제3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입금확인서 사본 1부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
-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신청일 현재 total.kcomwel.or.kr의 사업장>정보조회>근로자고용
정보현황조회(20103)에서 고용상태 유형별(고용/고용종료)로 출력)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17.1월~12월분, '18.1월~12월분) 사본1부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회사소개서(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2021년까지) 포함)
- 건물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
- 보조금 신청자의 인적사항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전화번호(휴대폰 등), 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 : 주민등록표(초본), 전화번호(휴대폰 등)
-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18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투비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 상기 지급조건 위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투자창업과 담당자 (☎ 02-2133-4765, sangwoon.jeong@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1부.
 2.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3. 상시 고용현황보고서 1부.

[별표 1]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1. IT융합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디지털콘텐츠산업	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3910 뉴스제공업
	73901 매니저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공연단체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 녹색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79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 비즈니스서비스업	70 연구개발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9 그 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5. 패션·디자인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6. 금융업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139 기타저축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209 기타투자기관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금융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6121 증권중개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
	66192 투자자문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7.관광컨벤션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8. 바이오메디컬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작성요령]

- ①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사업장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기재합니다.
 - ②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영위,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③ 보조금 신청인원은 내국인 신규 고용인원 또는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에서 10명을 제외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 1. 회사 소개서(향후 투자계획 포함) 1부
-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3.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입금 확인서 사본 1부
- 4. [별지 제3호]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1부
- 5.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6. 근로자 명단(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7.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 8.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해당)
- 9.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10. 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별지 제3호 서식]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단위:명)

외국인 투자 기업명			사업등록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고용 현황	전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월별 상시 고용인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월별 상시 고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작성요령]

- ※ 월별 상시 고용인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원으로서 내국인 근로자 수
- ※ 내국인 근로자 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